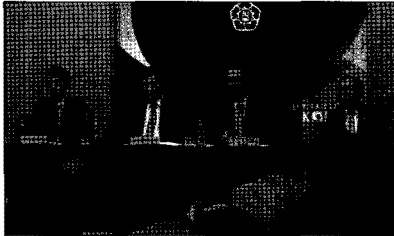


▣ 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전략의 확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지속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전략	정책과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①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②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③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확대 ④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전략의 확산	⑥ 민간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⑦ 동반성장을 1차에서 2·3차로 확산 : 동반성장 투자액 세액 공제(7%), 확산 인프라 구축 ⑧ 소재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간 협력 : 석유화학 가격예시제 실시, 철강재 안정적 확보 지원 ⑨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⑩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 ⑪ 중소·중견 성장역량 강화 : 생산성·R&D·산업인력 등 핵심 역량 확충 지원 ⑫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⑬ 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점검체계 구축	⑭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⑮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 구성

▣ ‘제7회 한국·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한국·EU, 국제카르텔 조사·M&A 심사에서 상호 공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4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표단과 제7회 한국·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양 당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개선 현황 및 IT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은 유럽연합(EU)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쟁정책 시행 및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 소속기관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은 정호열 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EU는 알렉산더 이탈리아니(Alexander Italianer) 경쟁총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협회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먼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 광범위한 경쟁정책 분야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경쟁법 집행 분야인 카르텔의 효과적인 적발·시정을 위한 양 당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카르텔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역과 해운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공동감면(리니언시)제도의 운영현황 및 최근 제정된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은 IT 분야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MS 건·인텔 건·퀄컴 건·램버스 반도체 건을 논의 대상 사례로 상정했다.

이어서 양 당국 대표는 기업결합심사, 국제카르텔 처리시 공조, 양 기관간 직원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특히 세계 철광석 업계의 2·3위 업체간 M&A인 BHPB-Rio Tinto 건 처리 과정에서 상호공조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 및 '제6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 개최

전세계 경쟁정책 전문가들 서울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세계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최고위급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9월 15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각 대륙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와 함께 OECD, UNCTAD 등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의 경쟁정책 분야 싱크탱크인 AAI(American

Antitrust Institute) 및 호주·뉴질랜드 행정대학원의 경쟁정책 권위자 등이 참여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위기 중에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경쟁당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IT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정책의 추진 방향, 산업별 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 등 전 세계 경쟁당국이 최근 가장 주목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IT분야의 디지털 융합과 경쟁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대표의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법의 발전현황을 짚어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방송·통신·에너지 등 각 산업별 규제기관과 경쟁법 집행기관 간의 긴장 또는 협력관계를 유발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조화방안을 모색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경쟁당국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이 '더 나은 경쟁당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험과 조언을 제시했다.

한편, 9월 16일에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경쟁당국의 고위급 대표자가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내 경쟁법 현황 및 확산·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다.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경쟁정책·법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별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역내 경쟁법 관련 기술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당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추가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과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 가맹계약서에만 있던 기재사항의 일부 내용 추가 △ 가맹본부의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보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규제 합리적 개선 등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했다.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명확화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을 개선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의 행정 합리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14일)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 등록 30일, 변경 등록 20일)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은 계속 감소

2000년 7조3천억원 규모에서 2010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1일 지정한 자산기준 5조 원 이상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010년 4월 1일 기준 5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 5,246억 원이었으며,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이 보유한 4,490억 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이 보유한 1조 756억 원이었다. 2009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45개 집단의 채무보증은 10개 집단이 보유한 1조 2,597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960억 원보다 4,363억 원(25.7%)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543억 원이 해소되고, 신규로 1,978억 원이 발생해 지난해 5,213억 원보다 2,565억 원 감소했으며,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채무보증 1조 1,747억 원 중 1,798억 원이 해소됐다.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1998년 4월 63.5조 원 → 2000년 4월 7.3조 원 → 2005년 4월 4.0조 원 → 2010년 4월 1.5조 원), 공정위는 그간의 제도 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01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 회사간 주식보유, 주요 환상형 출자 등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지정한 자산기준 5조원 이상 5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분석·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소속 회사간 주식보유, 주요 환상형 출자,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기업공개 등의 현황이다.

내부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53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0.50%로, 총수 일가 지분율은 4.40%(총수 2.12%, 친족 2.28%), 계열회사 지분율은 43.58%, 비영리법인·임원 등의 지분율은 2.52%였다. 2009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31개의 내부지분율은 50.46%로, 작년(52.86%)에 비해 2.40%p 감소됐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4.34%로 전년도 4.53%에 비해 0.19%p 감소했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비영리법인·임원등의 지분율은 다소 증가했는데, 계열회사 지분율은 2009년 45.87%에서 2010년 43.56%로 2.31%p 감소했고, 비영리법인·임원 등의 기타 지분율은 2.46%에서 2.56%로 0.1%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085개 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9개사(2.67%)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는 755개사(69.6%)였다. 35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 12개의 내부지분율은 54.63%로 일반 기업집단 23개(48.72%)보다 5.91%p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5.68%, 계열회사 지분율은 45.24%로 모두 일반 기업집단(각 3.85%, 42.86%)보다 높았다.

계열회사간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기업집단 31개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43.56%로 전년도 45.87%에 비해 2.31%p 감소했다. 31개 대기업집단 중 19개 집단은 계열회사 지분율이 감소했고, 12개 집단은 지분율이 증가했는데, 계열회사 지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으로는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화, 효성, 씨제이 순이었으며, 계열회사 지분율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 KCC, 현대산업개발, SK, 현대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은 14개이고, 10개 지주회사체제 전환 집단을 포함한 21개 집단은 순환출자가 없었다. 지주회사체제 전환 집단 중 SK와 웅진은 기존 순환출자 중 일부를 해소했으며 유예기간 중 남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 중에는 동부가 기존 순환출자 중 일부를 해소하기도 했다.

기업공개 현황 및 상장·비상장사의 소유지분구조를 보면 전체 53개 대기업집단 소속 1,264개사 중 상장회사는 213개(16.85%), 비상장회사는 1,051개사(83.15%)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35개 소속 1,085개사 중 상장회사는 193개사이고 기업공개비율은 회사 수 기준 17.79%, 자본금 기준 60.77%였으며,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 18개 소속 179개사 중 상장회사는 20개사이고 기업공개비율은 회사수 기준 11.17%, 자본금 기준 13.04%였다.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상세현황은 오픈니 <http://groupopni.f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최종 부과과징금 감경사유 구체화·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비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와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지난 5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부과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 했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했는데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 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한 것.

또한,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을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단계로 일원화했다.

그리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을 합리화 했는데 △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한도 확대 △ 위원회 심리 중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는 등 협조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새로이 인정 하되, 감경한도는 조사 중 협조한 경우와의 차별을 위해 15% 이내로 한정 △ 심의일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규정 △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협력 및 자진 시정에 따른 중복 감경을 배제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심결례 및 판례에도 반영토록 했는데 △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한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판례 반영) △ 과징금 산정기초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와 매출에누리, 매출합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판례 반영)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판례 반영) △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각 조항 별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그 중 최대 금액만을 부과하도록 명시(심결례 반영) △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합의일에 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심결례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관보에 게재(2010년 10월 20일)되는 즉시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예외토록 했다.

▣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10월회의' 참석

각국 경쟁당국 모여 녹색성장 문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인옥 부위원장이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 '녹색성장과 경쟁정책의 관계' 등 최근의 경쟁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의장단회의(Bureau Meeting)에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한국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운용경험에 대해 집중 소개하기도 했다. 10월회의에서는 △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 △ 환경적 맥락에서 체결된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 경쟁자간 정보 교환 △ 경쟁법 사건의 중재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녹색성장'을 핵심주제로 잡고, 3개 소주제에 대해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도입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시장진입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등 경쟁 왜곡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에서는 전통적인 명령·통제방식이 아닌 시장메커니즘과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 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으며, '환경 분야의 수평적 합의'에서는 환경오염 감축 및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간 공동행위, 기업결합, 합작투자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쟁자간 정보교환'에서는 경쟁자 간의 정보 교환에 따른 경쟁제한효과 및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하면서 각국의 경쟁법 집행사례를 논의했고, '경쟁법 사건의 중재'에서는 경쟁당국 및 법원을 통한 경쟁법 집행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미국·유럽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재(Arbitration)'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제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운용경험을 소개했는데, 특히 지난 2007년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범운영국가로 선정된 후,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간의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대기업 총수 간담회 개최

롯데 등 8개 대기업그룹과 지경부장관, 공정위원장, 중기청장간 모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10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8개 대기업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대기업 그룹 총수로는 롯데 신동빈 부회장, 대림 이준용 회장, 현대 현정은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OCI 이수영 회장,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대한전선 손관호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취지와 내용을 대기업 총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동반성장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내부의 인식 전환과 기업문화로서의 정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그룹 총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룹 총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 제고가 기업네트워크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대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사 지원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그룹 총수들도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각 그룹의 동반성장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동반성장전략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노력의 확산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안)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작성 및 변경을 보다 쉽게 처리해 생협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정관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정관례 개정은 지난 3월 생협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관은 법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로 정관의 모범적인 표준정관례를 고시함으로써 법인의 자의적 운영 및 정관상 중요사항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생협법상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의료생협의 이익배당 금지 등을 고려해 개정법에 배치되는 종래 정관례 조항을 개정했으며, 연합회 정관례의 경우에 조합 정관례의 목차를 기본으로 하되 단위 조합과 구별되는 사업의 종류 및 회원의 자격 등 세부내용은 연합회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할 것 등이다. 표준정관례는 생협의 설립부터 소멸까지의 운영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협의 정관 작성 및 변경에 적극 참고·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협 정관은 광역지자체장의 인가사항이어서 지자체의 생협인가 등을 위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생협법령 및 표준정관례 개정 등을 통해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자체 실무자들의 생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 생협법의 취지 및 내용을 교육하는 워크숍 개최할 예정이며, 생협의 활동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생협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해 생협의 저변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제9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대상은 서울대 경제학부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공정경쟁연합회가 후원한 ‘제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간 조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9개 대학 21개 팀이 참가·경연했으며, 특히 8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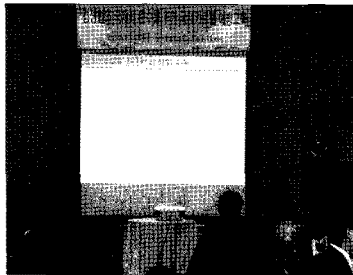
사흘간의 열띤 경쟁 결과, (주)인투더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경연한 서울대 경제학부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우수상은 ‘5개 해상 풍력발전기 제조 및 특허 실시허락 사업자와 특허풀 관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주)카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건’을 다룬 연세대 상사법학회팀과 ‘파인애플사 외 3사의 부당공동행위 및 파인애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건’을 다룬 성균관대 경쟁법학회팀, 그리고 ‘몬탄토코리아(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다룬 서울대 경제법학회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엔지화학(주) 및 화사전지코리아(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경제학과 연합팀과, (주)어플(Upple Inc)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 그리고 (주)DJ엔터테인먼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프리미어(Joint Venture)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중앙대학교팀이 수상했다.

▣ 국제카르텔 현지설명회, 미국 한인사회에 큰 경종 울려

약 130여명의 현지 기업인, 로펌, 언론사 등 참석해 성황리에 마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6일, 국제카르텔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LA 현지에서 국제카르텔 예방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금호아시아나 등 많은 대기업의 국내 본사 및 미국 서부지역 진출기업의 임직원, 국내외 로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LA 총영사관 김재수 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현지 언론에 의한 열띤 취재가 이루어져 국제카르텔 문제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 및 한인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와 함께 이번 현지설명회를 주최한 윤원석 KOTRA LA센터장은 “평소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의 관심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매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카르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조사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직접 우리 기업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조사와 관련한 생생한 경험을 직접 우리 기업인들에게 전달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하워드 파커(Howard Parker)와 변호사 이안 시몬스(Ian Simmons)는 국제카르텔 조사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이 경쟁당국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LA에서의 현지 설명회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28일 오전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와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미국 서부지역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DRAM, LCD, CRT 국제카르텔 사건 등 우리기업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하고 있다.

이번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통해 양 당국간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조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내부거래공시제도 관련 질문·답변 사례,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코너를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 개설하고 각 기업집단에 동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코너에서는 2000년 4월 내부거래공시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수백 건의 질의·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해 공시대상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질문답변 내역으로는 공시일반 38건, 유가증권 24건, 자금거래 31건, 자산거래 32건, 상품·용역거래 32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54건, 보험 및 퇴직연금 12건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총 223건을 문답식으로 게재했다. 주요 게재 사례를 살펴보면 △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비계열사에 매각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거래의 경우 회사는 공시의무가 있으나 개인은 공시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회사와의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공시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0만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2009년 기준)하는 등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와 통신판매 미신고, 거짓신원정보 등 사업자 신원 불분명에 의한 사기사이트,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었지만, 소비자는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에는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 구매로 확대(시행령)한 것과,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시행규칙)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통분야 상생협약 이행평가·총5173억원 지원효과

이마트 '우수' 등급,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양호'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2009년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 신세계(이마트)에 '우수' 등급, 롯데쇼핑(롯데마트) 및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납품대금 지급 시에 평가대상 5개사 모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으며, 5개사가 1,35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 5173억원 〉

구분	계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	기타
지원액 (협력사)	5,173억원 (1,354개사)	3,490억원 (168개사)	1,590억원 (1,135개사)	93억원 (51개사)

'우수' 등급을 받은 신세계 이마트의 협력사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회사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경쟁역량 지원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중국 현지 26개 이마트에 유통시켜 해외 유통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66개사에 미래채권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820억 원 지급 및 네트워크론을 통해 102개사에 2,67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 지원, 협력사 사원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 교육 및 유통대학 입학 지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협력회사 사원의 자질 향상과 협력사 존중경영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평가는 협약이 도입된 이후 유통분야에서는 최초이고 전체적으로는 여덟 번째로 실시한 평가로,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대상인 대형마트 5개사를 포함한 55개사에 대해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상생협약의 정착을 위해 평가가 완료된 삼성, 두산, 롯데 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12월경에 편의점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참여 대기업을 통한 1, 2차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 「공정화지침 및 협약 절차·지원기준」 개정

대기업이 1차 협력사 통해 2차 협력사 지원 정당·대기업 임원 평가시 협력사 지원실적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는, 동반성장 협약의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했다. 또한,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를 예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례를 예시했다.

협약기준 개정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에 통보하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대기업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공정화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로 예시하고,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7가지 사례를 예시해 대·중소기업간 정당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자료 요구행위의 위법한 사례와 정당한 사례를 예시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시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원가내역 등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한 일방적 사업장 출입 및 실사를 금지했다.

또한, 구두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확인 요청서 표준 서식을 제정하고,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지원기능을 예시해 수급사업자가 단가 조정시 조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반성장 협약의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했다.

한편, 협약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구매 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반영 △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 △ 원자재 직접 공급 확대 △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확산 △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을 유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합작사 설립계획 철회

국내 전산업에 영향 큰 글로벌 대형 M&A 첫 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9일 세계 2, 3위의 호주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2009년 12월 생산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확정에 있어서 상품시장은 해상운송 분광, 과광, 펠릿 시장으로 확정하고, 지리적 시장으로는 철광석 가격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각지(서유럽, 동아시아 등)의 철광석 가격변화가 유사함에 따라 세계 시장으로 확정했다.

경쟁제한성 분석에 있어서 외형상 생산부문에 한정된 조인트벤처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M&A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공동 생산으로 인해 양 사간 비용, 물량, 품질 등이 동일해져 경쟁의 유인 및 능력이 구조적으로 소멸되고, 조인트벤처가 모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으므로 판매부문간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곤란하다는 것.

시장집중도 분석에 있어서도 과광시장은 결합 후 점유율이 55%로 1위가 되고 2위(10%)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분광시장도 결합 후 점유율이 38%로 경쟁제한성은 추정되지 않지만, 1위가 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펠릿시장은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축(단기) 또는 생산능력 확장계획 축소(장기)를 통한 가격인상 우려가 존재하고, 조인트벤처 설립시 주요 공급업체가 2개로 줄어들고 상호 지분이 연계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검토하면서 신고회사는 생산량 증대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미화 150억 달러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주장하지만, 생산량 증대보다는 축소유인이 크고, 비용절감 효과는 M&A를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자로의 이전 가능성도 낮은 만큼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공정위는 이상을 종합했을 때 본 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0월 1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신고회사에게 송부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외국기업간 M&A가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글로벌 대형 M&A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은 공정거래법 제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외국에서 발생한 M&A에 적용한 첫 사례로, 전원회의 심의에 이르지 못한 것지만 양 사의 계약 철회를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금지조치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 이는 한국 공정위의 적극적인 주도로 M&A 심사에 있어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첫 사례이기도 했다.

□ 2010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편입 8개, 제외 6개 등을 포함해 2개 증가한 1339개

2010년 10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2개)의 소속회사 수는 1,339개로 지난달 1,337개에 비해 편입 8개, 제외 6개 등을 포함해 2개 회사가 증가했다.

〈 2010년 9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0. 9.2.	편 입				제 외						증감	2010. 10.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상산 종결	천축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52개)	1,337	4	4	-	8	5	-	-	-	-	1	6	2	1,339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8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8개 소속회사 증가했다.

△ 회사 설립은 4개로 {엘지 :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 포스코 : (주)포스코엘이디 / 씨제이 : (주)오미디어홀딩스} 등이다.

△ 지분 취득도 4개로 {에스케이 : 에스케이핀크스(주) / 지에스 : (주)알폰소로뎀버그코리아 / 한진중공업 : 별내에너지(주)} 등이었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5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등으로 총 6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은 5개로 {대우조선해양 : 삼우프로펠러(주) / 씨제이 : (주)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 효성 : (주)럭스맥스, (주)럭스맥스네트웍스} 등이었다.

기타로는 금호아시아나가 주주간 협약 변경으로 중한세계물류(주)를 계열 제외했다.

▣ 2010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편입 18개, 제외 9개 등 9개 회사 증가

2010년 11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52개의 소속회사 수는 1,348개로 지난달 1,339개에 비해 편입 18개, 제외 9개 등 9개 회사가 증가했다.

〈 2010년 10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0. 10.1.	편 입				제 외						증감	2010. 11.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52개)	1,339	12	5	1	18	2	3	-	3	-	1	9	9	1,348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총 18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은 12개 {에스케이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 / 엘지 : 엘지도요엔지니어링(주), (주)하우스인터페이스} 등이다.

△ 지분 취득은 5개 {포스코 : (주)대우인터내셔널 / 엘에스 : (주)화창 / 동부(주)다사로봇 / 웅진 : (주)늘푸른저축은행} 등이다.

△ 기타로는 1개 {한국투자금융 : (주)새한정관} 등이었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5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친족 분리 등으로 총 9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2개 {씨제이 : 에스씨로지스(주) / 동부(주)동부케미칼} △ 지분 매각 3개 {삼성 : 용산역세권개발(주) / 케이티 : (주)도레미미디어} 등 △ 친족 분리 3개 {효성 : (주)성림, (주)오양공예물산, 해동무역(주)} △ 기타 1개 {케이티 : (주)파란고양이} 등이었다.



공정위 인사 동향 2010 9. 13.~11. 5.

9. 13.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안영삼**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서은택**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에 의거 휴직을 명함.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주사보 류호형**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박진호**
행정주사에 임함.
-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이동규**
행정주사보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근무를 명함.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김현주**
행정주사보에 임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9. 14.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서기관 안승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강신민**
파견복귀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에 보함.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서기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2010.9.14.~2010.12.31.).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정훈**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0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일본, 와세다 대학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0.9.15.~2011.9.14.).

9. 15.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손계준**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금융투자 약관심사 T/F 근무를 해제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보 정인태**
복직을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9. 16.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홍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기간:2010.9.16.~2010.10.17.).

9. 17.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찬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행정사무관 박재길**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주사 공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9.17.~별도발령시까지).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김혜영**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주사보 강나리**
국방부 전출을 명함.
- **국방부 행정주사보 조정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9. 20.

- ◎ **종합상담과장 서기관 정정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서기관 서남교**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중합상담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보 조정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9. 27.

-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 하은광**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피계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기간:2010.9.29.~2011.9.11.).

9. 29.

-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상협**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2010.9.30.~2011.9.29.).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정찬복**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9.29.~별도발령시까지).

9. 3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유선**
일본, 홋카이도 대학 파견기간 연장을 명함(파견연장기간:2010.10.1.~2012.3.31.).

10. 1.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김맹규**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태휘**
파견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서기관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0.10.1.~2011.9.30.).

10. 4.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정정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기능8급(사무원) 김성열**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을 명함
(기간:2010.10.4.~2011.5.3.).

10. 8.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서기관 김대영**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국제카르텔조사담당 전문관을 면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행정사무관 오동욱**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강도영**
서기관에 임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사무관 이정원**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손주의**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근무를 명함.

10. 11.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기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10.11.~별도발령시까지).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서기관 오행록**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에 보함.

10. 13.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정찬복**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행정사무관 구성림**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10.13.~2010.11.30.).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상운**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10.13.~2010.11.30.).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재원**
카르텔조사국 카르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연구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회계결산 및 지출담당 전문관을 면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배지영**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주사 장창식**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주사 이철웅**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주사 이성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0.13.~별도발령시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공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10.13.~별도발령시까지).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주사 김백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0.13.~별도발령시까지)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주사 이용만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와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0.13.~별도발령시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정운학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근무를 명함.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행정주사 김종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행정주사보 김홍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10. 18.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홍직

육아휴직 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기업협력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정영운

파견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근무를 명함.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주사 김종완

기업협력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면함.

10. 20.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송정원**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근무를 위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함(휴직연장기간:2010.11.1.~2011.10.31.).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9급(사무실무원) 김현미**
기능8급(사무실무원, 근속승진)에 임함.

10. 27.

- ◎ **외교통상부 행정사무관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10. 28.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봉삼**
대통령실 진출을 명함.

11. 1.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서기관 장춘재**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행정사무관 현정주**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장관**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1.1.~2010.11.5.).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행정사무관 정영교**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사무관 이동미**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근무를 명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1.1.~2010.11.30.).

◎ 종합상담과 행정사무관 남기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종합상담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0.11.1.~별도발령시까지).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주사 조의제**
부위원장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부위원장실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성수

파견복귀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행정주사 김미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기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근무를 명함.

11. 3.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행정사무관 김건훈**
보건복지부 진출을 명함.